

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거주불명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공고기간 : 2024. 12. 11. ~ 2024. 12. 25.
- 공고대상자

성명	생년월일	주민등록증 발급기간	거주불명등록 당시 주소
차**	2007.12.20.	2025.1.1.~ 2025.12.31.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 17 000동 0000호(청라동, 청라한라베발다)
최**	2007.12.24.	2025.1.1.~ 2025.12.31.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319번길 3~10 000동 0000호(청라동)
이**	2007.12.20.	2025.1.1.~ 2025.12.31.	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102번길 25 000동 0000호(청라동, 청라푸르지오아파트)
김**	2007.12.24.	2025.1.1.~ 2025.12.31.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300 000동 0000호(청라동,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)
나**	2007.12.19.	2025.1.1.~ 2025.12.31.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300 000동 0000호(청라동,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)

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(담당자 : 진성원, 문의전화 : 718-3630)

2024년 12월 11일

인천광역시 서구 청라2동장

